

기술의 발전과 납세자 권리

가상자산의 기부, 모금기관과 기부자의 관점에서

토론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이수현 연구위원

가상자산 기부, 모금기관의 입장에서

- 민간 복지자원의 개발에 대한 필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비현금성 자원이 현금자원 못지않은 중요한 재정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음. 최근 기존의 기부금품법에서 정의하는 기부금품의 개념 곧 현금과 물품(제2조1항)을 넘어서는 기부재산 종류의 다양화가 나타남. 특히 빠른 디지털화와 함께 비트코인, NFT와 같은 가상화폐를 통한 기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 그러나 현재 국내의 비현금성 자산 기부와 관련된 법, 세금, 행정적 처리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현금기부와 비교해 미흡한 수준으로, 기부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제약요건이 발견됨
-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기부금의 수령이 어렵고, 수령 후 관리도 어려우며 과세 방식도 명확하지 않아 기부를 받는 입장에서 가상자산을 통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기 어려움
 - 미국과 영국의 경우, 가상자산을 기부하는데 발생하는 절차를 전담해 처리해주는 중간조직들도 있지만 현재 국내의 경우 가상자산을 기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의 문제, 자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운용의 문제를 모금기관 내에서 해결해야하는 상황임
 - 가상자산의 경우, 관련 법제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자가 관련해 문의할 경우 여러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

가상자산 기부, 기부자의 입장에서

- 암호화폐 기부 플랫폼인 Giving Block의 연례보고서(2023)에 따르면, 암호화폐 및 NFT 기부를 위한 기술과 플랫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파트너가 되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향후 10년간 암호화폐를 통한 기부는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함
- 가상자산 기부에 대한 대중의 관심, 국내에서는?
 - 나눔문화연구소가 진행한 일반국민 대상 조사연구(2022년)에 따르면 기관을 통하지 않는 방식, 어플리케이션이나 메타버스 등 새로운 방식으로 기부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비율이 특히 20대에서 높게 나타남 (전체 평균의 2배)
 -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절세와 사회환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기부 시 세제혜택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중요해 보임
 - * 국내 고액자산가(금융자산 100억 이상)들의 경우 전체 자산의 약 40%가 금융자산이며, 약 60%가 기부에 참여하고 있음. 특히 영리치(40대 이하의 자산가)들의 경우 전년 대비 기부금액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임. 그런 한편 가상자산과 NFT 등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불안정성이 높아 이에 대한 투자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9;2022)
- 기부자의 입장에서 가상자산의 성장 가능성, 이를 통한 기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으나 이러한 제약 요건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활성화는 어려울 수밖에 없음